

판자집 강제 철거에 대한 조사보고

1. 성동구 관내

1. 성동구청 건설과 건축계장 상세조사

A. 기철거 완료문 32동

右는 5, 2층신거 전후에 걸쳐 판자집 신축 또는 기건축물을 계고서 없이 경찰이 단독철거 진행하였음은 경찰구두 보고에 의한것임.

B. 계고서별부 63동

右는 마장동 가축시장 건축용지내 건축물로서 4/25일까지 철거완료하라는 계고장을 발부 헌재 철거도중에 있음. 합법적이요 불가피한것을 인정함.

C. 군자동 이재민동 352동 철박촌

원래 중앙정부지에 철거당한 이재민들로서 현재 위치가 저습하고 비위생적임으로 미아리방면에 이전 계획에 있다함.

D. 기타 이직 계고서 발부한건 전무함.

2. 성동경찰서 보안계 건축주 임상대조사

선거 전 무허가 판자집 신축하는 것을幾個증거 시킨것은 있으나 선거후는 없다.

3. 현장조사

4/29(년5월5일) 오전7시경 성동동 보안주임 지휘하에 정복경찰 7명 동원하여 신평동 약수동(10번) 산30번지에 건립한 판자집 6동을 철거 혹은 증파 실시한 사실이 있음.

2. 동대문구 관내

1. 청량리노점조합장 유천백 및 총무 김서구 상대 조사

A. 철거 노점수 215점

B. 노점철거일시 4/29년 5월17일 오전1시부터 5시까지

C. 철거상황 청량리경찰서 보안계장지휘 하에 약40명의 정복경찰관이 동원되어 일방철거 일방추락으로 철거물을 반동 전격적으로 철거 완료하였음.

그다음 55 「폐이지」에 그것좀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것입니다.
이것은 「미스」가되었습니다. 노점의 설치개황 미구조 그것이 "C" 다음에 "D"로

D. 철거품자재는 경찰서후정에 무질서하게 산적하여 차기것을 분별하기 곤란함.

경찰서의 지시에 의거 일률적으로 1을 기구조 전면고 6척 총 4척5촌

후

던고

5척

장

6척

전죽비

용

으

로

서

매

호

당

8천

원

내

지

1만

원

정도

그러

면

215호

에

215만

원

의

순

해

를

가

져

왔다.

D. 노점조합장 납금상황

점용번호 1호-103호까지는 매일

조합비

는

50

원

청소비

는

60

원

제

110

월

점포번호 104호-215호까지는 매일

조합비

는

30

원

청소비

는

60

원

제

90

원

노점조합에서 청량리경찰서에 납부한 전액 매점포당

P. 청소비는 60원
제 110원
1,700원 1,200원 700원 등 등급별로 각출하여

4291년 4월30일에 일금10만원

4291년 4월11일에 일금10만원

G. 경찰서에서 납부하였고 기타집대비로 6만천여원을 지출한 사실 있음.

C. 경찰서로서의 사전지시 5월11일부터 동월15일까지사이에 매일같이 경찰서에 호출당하여 철거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전노점조합원들이 불응할뿐더러 설마 강제철거

아 할까하는 의도에서 철거를 거부하여 여왔든 것임.

H. 철거후 대책

경찰서에서는 동광여관전면에 있는 공지(추기아체시장)로 이전토록 주시노력한 사실이있음. 치대지는 동광여관주인외 3인의 소유로 전면적 600평내지 700평가량으로 위치가 편제하여 고개이 회소하여 시장발전상 희망이 없는 곳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이 반대할뿐아니라 대지관계가 대단히 복잡하여 결정하기 곤란하였다음.

5월17일 노점조합 대표 6명 지주축 대표 3인이 경찰에 모여 대지사용상 타협회를 한 결과 지주축 요구가 4방6척에 당시 상건물을 지주축이 채 입지고 그대신 조합원은 보증금 1만원식을 사전납부하고 입주후 매월세금으로 매점포당 1백원식을 납부할것을 제의 그리고 조합의 운영권과 관리권을 지주축에 일임하라는것이다.

현재 긴급구호책으로서 서에서는 청량리 시장조합과 타합하여 시장내 도로상에서 노점 보도록 주시하고 있으나 전부터 보고있는 상인들이 반

대로 5월23일 현제로 약 70점포 정도가 개점하였다는 것이다.

1. 노점조합의 인적구조

단기 4291년 4월27일 총회를 개최하고 좌와 如의 선출 하였음. 당일 청량리점 찰서를 대표하여 김보안개장이 임석하여 노점조합의 무한한 발전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철대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요지의 축사까지 한 사실이었다.

조합장 장유천

부조합장 김서구

총무 김서구

감사 홍봉사

감사 이창식

고문 강형우

고문 정기원

평의원 12인

2. 동광여관주인마당 상대조사

조사이유

동광여관주인이 노점조합이 전 후보자로 되어 있는 대지주의 한사람이요 이전 예정자로서 선정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았고 있기 때문에 基진상을 규명함으로서 노점처거 이면에 감세하는 정치성 여부를 밝히는데 있음.

후보자로서 선정되기까지의 경위

전2대국회의원 김영수씨 주동으로서 청량리 176번지에 있는 공지 약700평을 이용하여 노점상인들을 한국에 몰아넣어 노점시장을 만들고 조합을 만들어 그운영과 관리권을 정착함으로서 이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4290년 12월경부터 채수하기 시작하여 김나님씨를 외교로 내세워 지주축과 교섭을 진개한 결과 지주축과 타협이 성립되어 대지사용에 대한 체대 계약 작성되어 지주축 4인대표로 백모와 사용자축으로 김영수 김난년 한모 이모 4인이 공동서명 날인이 있었다함.その後 노점조합을 철거시켜 계약된 공지로 이전토록 각종수단을 강구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임대기한을 연기하여 4월2일 한 꼭시장을 이전시키겠다고 혹은 시장처기가 나왔다.

김명수씨부인과 이기봉씨부인 박미아 라여사와의 친분관계로 허가가나왔다는등 차일 피날 지주축을 기만하여왔으므로 사용자축은 당황한 나머지 5월15일까지는 틀림없이 노점을 이전시킬터이나 한번만더 연기해달라고 애원하면서 만약其時위계시는 손해 배상금으로 일금5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5월5일부로 약속수표50만원짜리를 지참한 사실이 있었음.기간 사용자축은 관계 당국과 긴급한연락을 취하여 5월7일 드디어 노점이 철거되었음.

5월17일 하오2시 김명수씨가 직접 내방하여 내가 4회차 운동하려나왔으나 콤해결플터이니 잘 양해하여 달라고 하기에 기쁜이 이미 경파하였음으로 응할수없다고 거절하였다 함.
그레 청량리경찰서장 김진수총경을 상대로해서 조사했는데 이미 그 노침을철거해달라고 해서 청량리 서장을 불러서 세차례나 서약서를 받는일 이 있습니다.

4280년 12월18일

4291년 1월 22일

a. 철거동기
도시미 관상관계와 위생상관계등으로 상급관청으로부터 철거 지시도 받았을뿐만아니라 실지로보아 철거해야만되겠다고 통감한나머지 수 차례

질체 사건철거를 권유하였으나 차일 자연물으로 부득이 주간의 소란을 피하기위하여 야간철거를 단행하였든 것입니다. 야간철거운운하여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다하여 꾸지람을 하자만 주간은 도시허 불가능함으로 최선을다하느라고 각별히 야간을 이용하지않으면 안되었다는 심정을 이해해 주기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b. 사후대안
사진에 청량리176번지에있는 공대지로 이전하도록 주시하였고 지금도 계속노력중이요 또 별도방안도 고려중에 있다.

하여간 철거민들이 살수있도록 연구중이라는것이었다.
김명수씨 관계는 언급을 회피하고있었다. 철거자체는 곧 상인(주인)께 연락하여 가서가도록 지시하였으나 아직까지 가지가지 않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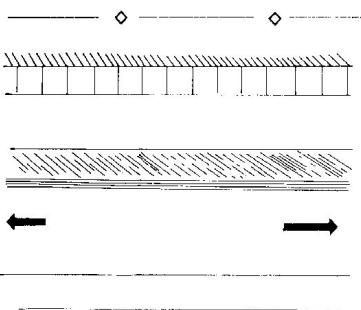
2. 조사단의 전

1. 철거노점의 위치적고찰

금번 철거당한노점은 위치상으로보아 긴급처치없이 도시미 관상 큰 영향이없다고 인정하였다.

그림을보면 가운데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지동차가 다른 도로가 있고 그점포와도 사이에 이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다지 급하지 않지않는가 그래서 노점을 일정한 규격하에 통제하면 운영상 묘를 가지 않을것이라고 봄.

(참고)



도심지 종로에 서 애시노점이라하여 오후5시반만 되면 개점을 하기하는데 비활것같으면 이곳은 도시미관상운운은 큰영향은없다고 보았음.
고로 균일된 규격 하에 일정한 통체 및 에서 통일된 행동을 취한다면 본래의 노점위치에 부구시켜주는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됨.

2. 철거동기의 정치성여부
도로상 통행방해 운운하지만 등대문시장 날대문시장에 비하면 문제가 되지않을 뿐더러 별자장이 있으리라고 인정함.

상황은 館上如히 정치적 관련은 전무하나 다만 1개인의 이전관계 또는 김명수씨일파가 노점상인을 한곳에 집결시킴으로서 조합의 운영관리권을 잡아함으로서 이전화하려는 애심에서 기성노점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여 득자적인 행동으로 철거운동을 전개한 사실이 노점들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더욱증악감을 유발하였을뿐만 아니라 밖데기운을 조성하였음을 발견하였음.
그다음 청량리시장노점조합규약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보아주십시오.

참 고

● 청량리시 장노점 조합규약

규 약

1. 본조합은 청량리 노점조합이라 칭한다.

1. 본조합은 국가시설에 순용하고 준법 사상을 배양하여 일체 단결 융화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1. 본조합은 일인득재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상호협조 동일보조로 친행만전한다.

1. 본조합은 소요제정을 필요(보유)한다.

1. 본조합은 상부상조를 도모한다.

1. 본조합은 상무위원을 선임하고 소요장부를 비치한다.

1. 본조합은 고문와간령 조합장1명, 부조합장1명, 총무1명, 상무1명, 이하반을 두어 반에는 각평의원을 둔다.

1. 본조합은 가입금 및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징수한다.

1. 가입금은 가입시에 1차 징수하고 조합비는 소정 금액을 매일 징수한다.

1. 소정장소에서 1주일이상 무제출전업 또는 휴업 방고등으로 장소를 사용하지 않을 시는 조합원자격을 앓한다.

1. 조합비소정은 영업장소등급제로 하되 此를 3등급분한다.

역 원 선 출

1. 조합장, 부조합장, 총무, 상무는 직선방식으로 다수득표로 선출된다.

1. 평의원은 조합원이 내신하여 조합장이 위촉한다.

임무

1. 조합장을 충실히고 유사시에 긴급총회소집권 및 조합원 경계권을 가진다.

1. 부조합장은 조합장을 보좌한다.

1. 총무는 조합업무를 총무하고 조합의 금고를 담당한다.

1. 상무는 정부일절 및 상무를 시무한다.

1. 감사는 1년2회에 걸쳐 본조합의 사무 일절을 감사한다.

1. 평의원은 회원주지사항을 전달하고 조합원 대의원이 되어 조합비, 특별금징수 및 조합원의 동태를 조사보고하고 반을 통솔한다.

1.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 의무를負하고 역원의 선출 및 불신임 결의권을 가진다.

불신임 결의는 조합원의 3분지2이상으로 가결한다.

역원의 임기

1. 조합장 1년, 부조합장 1년, 총무1년, 상무 1년, 평의원1년으로 한다.

역원의 보수

1. 역원은 유급제로 한다.

1. 조합장은 보수지출을 임의로 못하고 역원회의에 심의지출한다.

1. 기타경비지출은 조합정임으로 지출할수 있다.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년회로 정한다. (4월)

1. 조합원에게 경리보고를 해한다.

1. 감사는 회계문서 경리부밀람권을 가진다.

비품장부

1. 조합원명부, 일원명부, 조합비정수부, 현금수불, 충급장현장.

정계

1. 조합원이 조합규약을 不守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봉이행시는 역원회의를 소집하여 역원전원의 3분자2이상의 가결로 업장장소에서 수출또는 적의정

제 예 치한다.

단기4291년 4월27일 (통과)

그 다음 동대문구 마포구를 마치고 성북구에 가서

3. 성북구 관내

구청에서는 제고장발부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아무런 대책도 없어 무자비하게 벌지와같이 20동이나 판자길을 강제철거하여 路鋪에 방황하고 있음.
거기에 명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판자침 철거 조사서

성 명	당 가	가 족 수	기 지	주 거 지	건 축 비	건 축 평 수	철 거 월 일
박 근 화	3		성북구 돈암동 2		7,000	3평	5월 3일
김 영 숙	6		성북구 돈암동 2		6,000	5평	5월13일
노 순 길	10		성북구 동산동		15,000	2평	5월13일
이 근 호	10		성북구 안암동	신15	70,000	5평	5월 5일
오 근 섭	4		성북구 안암동	신15	40,000	3평	5월 6일
정 영 운	9		성북구 성북동	신15	65,000	5평	5월 3일
이 완 희	3		성북구 성북동	신158	40,000	3평	5월 5일
김 태 순	8		성북구 성북동	신158	65,000	4평	5월 3일
정 태 진	7		성북구 청량동	12	80,000	8평	5월 6일
박 근 수	3		성북구 돈암동	2	25,000	4평	5월 6일
김 영 순	6		성북구 돈암동	2	50,000	5평	5월 3일
김 석 구	7		성북구 돈암동	2	50,000	5평	5월 3일
홍 영 섭	7		성북구 돈암동	2	25,000	6평	5월 3일
장 덕 문	5		성북구 돈암동	2	25,000	3평	5월 9일
고 순 사	7		성북구 돈암동	2	80,000	5평	5월 3일
정 생	1		성북구 안암동	104	20,000	3평	5월 7일
김 영 문	4		성북구 안암동	104	20,000	3평	5월14일
박 성 보	8		성북구 안암동	104	30,000	4평	5월17일
김 용 환	6		성북구 안암동	104	30,000	3평	5월17일
오 권 양	4		성북구 남암동		70,000		5월 6일

그 다음 3번 조사한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 이것이 구청에 가서 조사한 것입니다.

용산구 청

1. 진죽 행정 주관하는 전족파로서는 철거에 대하여 하등의 모르는 사실이며 5,2층 신거 기간 중 계고서를 발부한 건수 4건이나 상기한 4건도 현재 미철거 중이며 경찰이 단행한 백여호 철거에 있어서는 하등의 연락도 없어 경찰이 단독 입으로 한 것입니다.

경찰서

1. 진죽 행정이 경찰의 소관사무는 아니라 위생 교통 병화 관계로 서에서 단독으로 철거한 것이며 신거전부터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총신후에 할 것이라고 말하여 사무적 으로도 종횡적 으로 전연연락 차 않고 단독으로 철거를 집행한 것이며 외에도 파출소 관내별로 신거 후 강제 철거를 집행하고 문서는 보고를 받지 않고 또 파출소에서도 보고를 하지 조차 않는 것이 조사의원들이 조사를 함으로 밝혀졌음.

철거전수	
용산역전	고정노점 57건
용산역전	유동노점 66건
보광동	20여건
원효로4가	3건
기타 각 시장 노점	30여건

천지에 나가본 결과

1. 철거민들이 용산역전 광장에 차주 계된 것은 4288년 89년 90년 91년 이상 4년간에 투하여 건립된 것이며 5,2층 거 기간 중에는 1동도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2. 서악서는 계출한 일이 있으나 계고서나 또는 철거 명령을 사건에 접한 일이 선거가 끝나기가 바쁘게 보복적으로 철거하였다는 것임.
3. 철거호수도 경찰과는 수에 차이가 상당히 많음.
실지 철거할 수
역전만도 200여호이며 경찰은 100여호라고 함.
4. 현재 집단수용(교통부부우회관) 수자만도 117세대임.
5. 집단수용상황
수용소 1, 2, 3층(파괴 가능)에 철막, 텐자집으로 임시 거주하고 있으나 차마 조사원들로서 환자 내실는 「거기」 의 수용소 같으며 기침상은 목불인]

견이오며 조속한시 일내에 긴급구호대책이 긴요함.

1. 보광동

1. 此지역은 관자집 철거민 집단수용부락변지도로변이온데 약1년 반전에 건립된 관자집 노점임.
2. 선거전에 말없다가 선거후에 잡자기 파출소에서 본서에 연락도없이 강제철거를 하였음.
3. 강제철거 당시 경찰관들이 폭언을 가하였다는데 其中 권순찰이란 순경은 연장자들한테도 입에 담지못할 폭언을 하여 철거민을 물론 주민들의 예를을 비등하게 하고 있음.
보광동 지내철거수
20여호 (파출소단독)

1. 원효로4가

- 3동을 철거하다 중지하고 있음.

조사단의견

1. 경찰은 사무적으로 태행정 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을 침해하였고 월권 행위를 저해한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며
2. 시장은 조속한시일내에 행정체계를 확립 시켜 주도면밀한 사후대책을 수립 할것이며
3. 시내전역에트한 무허가건축물, 관자집에 대한 장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있는 방향으로 시정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영동포구

1. 단기4291년 1월이랑 동5월2일까지 약4개월간 무허가관자집 건축동수는 56동임.
 2. 철거 체고서 발부상황
단기4291년 5월31일자로 신길동 흑석동 본동 관내소재 무허가관자집 14동을 동5월21일자로 영동포1가 94번지소재 무허가건축물1동 체15동을 철거기위하여 각각 체고서를 사건에 일부하였으나 철거사정이 시기적으로 태당치못하여 집행을 보류중에 있음.
 3. 기타상황
특기할 상황無함.
1. 조사구역 종구청관내
 2. 조사일자 5월23일

3. 판자침칠기호수 118동

종별 내역

가. 서울역전 신영동간도로 남산로교下 左右 양동에 남창동 92동 5월16일 철거하였음.

제 고장 빌부 5월9일 12월 양일간에 빌부하고 철거에 차수하였다. 구호대책은 전무. 此지역은 도로공사 관계로 매년 공사시기에 철거를 하면 동철죽 공사를 봄과 34일밖에 없었다는 점만은 불평이 있다한다. 방금공사를 차수중에 있으므로 부는 없으나 제고장을 할부한 일자와 철거를 강행한 일자와의 간격이 불과 34일밖에 없었다는 점만은 불평이 있다한다. 방금공사를 차수중에 있으므로 둘이나 한 조치라고 사료함.

나. 청량동 목정국민학교 교지내에 건축되어 있는 판자 19동 此지역은 4290년 9월경부터 교사건축관계로 의회에서까지 문제되었든 지역일뿐더러 교사건축공사 관계로 5월16일자 제고장 빌부하고 5월22일경 철거를 강행하였음. 제고시는 전부터 할부되어 있었으나 5월 말일까지 철거 보류를 교육위원회로부터 약속은 되어 있었으나 불의에 강행해였다.

4. 철거 예정지

목장 중원지내 약100동

을 지역 2가로부터 종로2가·통로5가·통로상 약 30동 남산시장으로부터 종로5가로 통하는 도로상건물 약140여동 수표동 중원지내 약60동 등 약270여동은 금년도 예산상에도 책정되어 있고 공사를 차공할 예정이라고 함.

우의 如히 보고하나이다.

그 다음 마포구 서대문구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서대문관내 무허가건물 철거 관계를 조사한바 관내 철거대상은 160건으로서 선거전에 기전률수가 134건이며 선거후에 무허가가로 건축한수가 16건에 해당되며 본 16동은 판자집 철거문제가 사회문제로 비등되는 차지에 건축을 한것이며 제고서도 빌부지 않고 강제철거한 기성건물이 6동이며 건축도중에 철거당한 수가 24건에 달하고 있음. 서대문관내 총보유수 2, 201동이라하나 확실한수는 확인되지 못하였음.

1. 제고장 빌부현황

거기에 수자가 나왔습니다.

(참고)	원체동	41건	홍제동	14건
의주로1가	1건	영선동	1건	
단리동1가	16건	연희동	1건	

증정2가	1건	증정3가	4건
북아현동	11건	교북동	1건
대현동	10건	신촌동	2건
대조동	5건	창천동	1건
녹동	3건		
행촌동	6건		
노고산동	13건	계	134건
종암동			

마포구 관내 무허가 건물 철거 대상에 대하여 其실례 左記와 如하오며 5월10일 경 계고서도 일부 치 않은 채 23동에 대하여 강제 철거 하였으며 시의회에서 판자집 철거 문제 가 장정되어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334건에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며 기종 311건은 아직 미철거 중이나 일익 강제 철거가 단행되고 있음을 철거의 순서가 진급치 않은 곳을 선착한데도 있고 부득이 철거 지침으로 아니면 철거 쳐소는 보류된 곳도 산전되고 있음.

염리동 일부에는 무허가 건축주에 게 경찰관이 5,000원 내지 35,000원정도의 건축목인료로 철거한 경찰관들이 있었다는 실례도 있음.

마포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상에 대하여 其실례 左記와 如하오며 5월10일 경 계고서도 일부 치 않은 채 23동에 대하여 강제 철거 하였으며 시의회에서 판자집 철거 문제 가 장정되어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334건에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며 기종 311건은 아직 미철거 중이나 일익 강제 철거가 단행되고 있음을 철거의 순서가 진급치 않은 곳을 선착한데도 있고 부득이 철거 지침으로 아니면 철거 쳐소는 보류된 곳도 산전되고 있음.	마포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대상에 대하여 其실례 左記와 如하오며 5월10일 경 계고서도 일부 치 않은 채 23동에 대하여 강제 철거 하였으며 시의회에서 판자집 철거 문제 가 장정되어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334건에 계고서를 발부한 것이며 기종 311건은 아직 미철거 중이나 일익 강제 철거가 단행되고 있음을 철거의 순서가 진급치 않은 곳을 선착한데도 있고 부득이 철거 지침으로 아니면 철거 쳐소는 보류된 곳도 산전되고 있음.
아현동	126건
신공덕동	15건
대홍동	21건
마포동	52건
용강동	2건
창건동	1건
고덕리	37건
도화동	26건
마포강변	7건
합계	334건

종로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 상황

- 철거 건수 21건은 도로공사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가 되는 위치로서 건축주 자신이 자진 철거한 것이 4동이며 경찰관이 등위 직선상에 전돌 7동에 대하여 강제 철거하였으며 동위 치에 존치된 무허가건축물 9동은 앞으로도 공사 작업상 부득이 계고장을 발부해 줄 것임.
- 구주관 및 사적공원, 종로5가 등 지역에 굽사시공 위치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250건이나 되는 바 이는 앞으로 철거 차단으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할 형편에 있음.

참 고

1. 조사구역

종로구 관내(철거대상)	무허가건축물 실태 (총 보유 수 1,578동)	
차 동	9건 대 차 동	5건 (미 확인)
매 매	13건 별 관	23건
사 직	4건 태 화 동	4건
종 교	18건 차 동	1건
신 문	2건 계 동	3건
중 앙	18건 차 동	2건
수 진	15건 문 화	20건
증 진	125건 운 현	12건
증 국	4건 탑 동	11건
증 국	5 대 묘 동	555건
증 신	215건 낙 산 동	132건
6 동	명률 1가동 명률 3가동	92건
242건 계 578건		

그리고 거기에 피해자 如左함.

이런 것 이 있는데 그것은 성동구 관내입니다.

참 고

피해자 명단 如左함.

1. 업 순 복

서구5인 천막집

2. 성균관대학	1년생 고학생	판자집
3. 최종환	판자집	
4. 김수교	판자집	
5. 이재우	부엌 증축파손	
6. 김용렬	증축 공사파손	
이상은 대부분 선거기 전통에 신축 증축하였든 것으로서 사설증거 권고한다. 있느니라.		
a. 도암의 삼 치개황 및 구조		
右 노점등은 6년전인 4289년 깨지의 시설원료 동수는 전기 215동으로서 기구조가 각각으로 산재되었음으로 미관상 미치는 엄청이 불소함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4290년 8월경에 청량리		